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7. 3. 28.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13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3. 26)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 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 1. 제안이유

- 가. 도정실황의 입체적 영상홍보화 및 유익한 영상콘텐츠 제작 · 공급 등을 목표로 추진중인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 나.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내 영상미디어 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담당관실 위탁사무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신설

- 인터넷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연기봉)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4일 제255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행정사무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절차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이번에 다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음.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인터넷 디지털방송<sup>1)</sup>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도정실황의 입체적인 영상 홍보,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4개업무를 전문인력과 인터넷방송시설을 갖추고 있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이견없음.

---

1) 인터넷방송은 텍스트(Text), 그림(Image), 오디오(audio), 동영상(video) 등을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가공, 압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비용에 대한 분석 비교(초기시설비, 연간운영비에 대한 자체운영 및 위탁운영 비용)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탁대상사무 중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 표현으로 사무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생략”

####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일련번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실과	일련 번호	위탁 대상 사무 명	위탁 대상 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정보통신 담당관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 영상콘텐츠 제작·공급</li> <li>·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li> <li>·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li> </ul> </li> </ul>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지방자치법 제95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별표】

## 민간 위탁사무

현 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 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 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정보통신 담당관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에 <u>(재단법인 총청</u> <u>관한 사항</u> · 인터넷 디지털방송 <u>시스템 구축 및 운영</u> ·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u>홍보</u> · 기타 인터넷방송에 <u>필요한 사항 등</u></li> </ul>	(재단법인 총청 북도지식산업진 <u>제95조</u> <u>홍원</u> )	지방자치법
	1~8	(생략)				2~9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참 고 자 료

###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 ① 개최개요

- 일 시 : 2007. 2. 8(목) 16 : 00 ~
- 장 소 : 도청 영상회의실(동관 2층)
- 참 석 : 7명(심의위원), ※ 위원장 : 정책관리실장
- 안 건 : 인터넷방송 위·수탁기관 선정

#### ② 개최내역 및 심의결과

##### □ 개최내역

- 참석인원 : 7명(심의위원 전원 참석)
- 안건상정(정보통신담당관)
  - 위·수탁대상기관(지식산업진흥원) 심의요청 및 배경설명
- 수탁 사업계획 제안 보고(지식산업진흥원 멀티미디어사업팀장)
  - 사업개요,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등
- 심의 및 선정 평가표 작성(심의위원)
  - 심의요청 내용과 수탁사업계획서의 적정성·참신성 등

##### □ 심의결과

- (재)지식산업진흥원을 위·수탁기관으로 의결 : 7명 찬성(전원)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 위·수탁기관 선정 발표 : 심의위원장(정책관리실장)